



자물쇠 제품 및 마케팅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 사건

32

Whyte v. Schlage Lock Co., 101 Cal.App.4th 1443 (2002)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캘리포니아 제4지구 항소법원	사건번호	G028382
판결 일자	2002.09.12	판결 결과	전부 기각(원심 유지)
원고 (피항소인)	제이. 더글라스 화이트 (J. Douglas Whyte)		
피고 (항소인)	슈레이지 락 컴퍼니 (Schlage Lock Company), 잉거솔-랜드 컴퍼니 (Ingersoll-Rand Company)		
참조 법령	Civ.Code, § 3426.1, subd. (d); 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2019, subdivision (d)		
참조 판례	Hilb, Rogal & Hamilton Ins. Services v. Robb (1995) 33 Cal.App.4th 1812, 1820, fn. 4, 39 Cal.Rptr.2d 887; Hunt v. Superior Court (1999) 21 Cal.4th 984, 999, 90 Cal.Rptr.2d 236, 987 P.2d 705; Diodes, Inc. v. Franzen (1968) 260 Cal. App.2d 244, 253, 67 Cal.Rptr. 19; PepsiCo, Inc. v. Redmond (7th Cir.1995) 54 F.3d 1262, 1269		
영업비밀	자물쇠 제품, 마케팅, 기술 등의 정보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불가피한 공개의 범위		

02 사건 개요

피고 슈레이지 락 컴퍼니(이하 '슈레이지')는 피고 잉거솔 랜드 컴퍼니(이하 '잉거솔')의 자회사로서 자물쇠를 생산 및 판매한다. 킷세트는 피고 슈레이지의 경쟁사로서 자물쇠 대형 판매상인 홈 디포(Home Depot)의 진열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슈레이지의 판매 담당 부회장으로서 홈 디포 등 대형 판매점에서의 판매를 담당했고, 피고 슈레이지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경쟁금지약정은 체결하지 않았다.

원고의 판매 능력을 인정한 퀵세트의 회장은 원고에게 이직 제안을 했고, 원고는 2000년 6월 16일 피고 슈레이지를 퇴사하여 퀵세트로 이직하였으며, 퀵세트에서의 업무는 피고 슈레이지에서의 업무와 유사하다.

피고 잉거술 랜드는 불가피한 공개의 법리(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¹⁾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금지명령(injunction)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 슈레이지와 잉거술 랜드를 상대로 계약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과 퀵세트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슈레이지는 원고에 대하여 불공정 경쟁, 영업비밀 부정취득, 계약 위반, 신뢰의무 위반, 경제 관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상 방해(intentional or negligent interference with economic relations), 그리고 횡령(conversion)을 근거로 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교차청구(cross-complaint)를 하였다. 또한 피고 슈레이지는 원고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시적 유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²⁾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승인하였다.

그 후 증거 제출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일시적 유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 슈레이지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시적 유지 명령 취소 신청을 승인하였고, 피고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은 거절하였다.

본 사건은 피고 슈레이지가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거절한 원심에 대하여 항소한 사건이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	피 고
피고 슈레이지가 주장하는 정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			원심이 이유 설명 없이 예비적 금지명령을 거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피고 슈레이지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이며 비밀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 원고는 피고 슈레이지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했다.

1) 영업비밀 보유자가 전 종업원이 영업비밀을 절취하였거나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가 경쟁자를 위해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리 하에서 새 고용인이 전 종업원에게 맡긴 책무의 내용상 전 종업원이 전 사용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이면 전 종업원의 근무를 금지시킬 수 있다.

2) 금지적 구제(injunctive relief)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있기까지 일시적으로 현상의 유지를 명하는 것

회사 전 피고 슈레이저의 비밀정보를 모두 파괴했고, 킷세트에서 피고 슈레이저의 영업비밀을 공개한 바가 없다.

원고가 피고 슈레이저의 경쟁사인 킷세트에서 근무하면 피고 슈레이저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04 판결 요지

예비적 금지명령 승인이나 거절은 법원의 재량이며, 항소심 법원은 증거를 다시 검토하거나 증인의 신뢰성을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예비적 금지명령을 거절하면서 원심은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심이 모든 상반된 주장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슈레이저가 보호하고자 했던 정보의 일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라 항소심의 목적을 위한 판단이며, 영업비밀 해당성은 증거에 기초하여 지방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피고 슈레이저 제품의 가격, 순이익, 생산비, 광고비 등은 비밀의 범위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킷세트의 회장도 해당 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러한 내용은 킷세트에서도 비밀에 해당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 슈레이저의 신제품에 대한 정보는 대중에 공개된 신제품 정보와 비밀인 신제품 정보의 구분이 없어 너무 광범위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슈레이저가 주장하는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전파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비밀 유지약정 대상이다. 그러나 홈 디포에 제공하는 가격 및 마케팅 제안문서는 피고 슈레이저와 홈 디포 간의 비밀유지약정이 없이 제공된 것이므로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슈레이저의 제품 가격, 순이익, 생산비, 광고비 등의 정보는 경쟁자가 취득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마케팅 전략과 계획 문서들은 경쟁자가 취득할 경우 피고 슈레이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으나 마케팅 연구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슈레이저의 기술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 슈레이저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반반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검토 기준은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원심 명령 유지를 뒷받침하는 모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슈레이저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거나 부정취득할 우려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원고가 피고 슈레이저의 영업비밀을 절취했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수 있다.

고 슈레이저는 실제 부정취득의 증거 대신 불가피한 공개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가 콕세트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 슈레이저와 콕세트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원고가 콕세트에서 맡은 업무는 피고 슈레이저에서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원고는 피고 슈레이저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고,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다. 불가피한 공개의 법리를 채택하는 경우 실제 부정취득의 증거 없이도 전 종업원의 이직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영업비밀 사용의 금지가 아니라 고용에 대한 제한이다. 불가피한 공개의 법리는 사실상의 경쟁금지약정을 생성하며 종업원의 유동성을 선호하는 캘리포니아의 공공정책에 반한다. 또한 불가피한 공개의 법리는 고용계약을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고용관계를 왜곡하고 경쟁금지약정 해석에 대한 균형을 무너뜨린다. 게다가 원고와 피고 슈레이저는 경쟁금지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약정을 생성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불가피한 공개의 법리를 채택하지 않는다.

피고 슈레이저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거절하고, 원고의 일시적 유지 명령 취소 신청을 승인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 원고의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05 Key Point

영업비밀은 종업원이 그 범위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본 판례와 달리 불가피한 공개의 법리를 채택한 주와 판례도 적지 않다. 불가피한 공개의 법리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우선하는 주에서는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캘리포니아나 뉴욕과 같이 종업원의 이직의 자유를 보다 우선하는 주에서는 거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